#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88

발의연월일: 2020. 11. 24.

발 의 자: 김철민 · 권칠승 · 강득구

민형배・황 희・박상혁

이정문 · 양정숙 · 이병훈

송옥주·김경협·홍기원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개발부담금액의 50%가 각각 배분되고 있음.

이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의 귀속주체에서 배제됨으로 인하여 광역 SOC사업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을 자체 부담으로설치·운영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배분 대상에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재원배분 비율을 국가 30%, 기초지방자치단체 50%, 광역지방자치단체 20%로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등).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3조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개발부담금의"를 "개발부담금 중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로, "지방자치단체"를 "시·군·구"로 한다.

제7조제4항 본문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등"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4
중 이 법에 따라 <u>특별자치시</u>	<u>특</u> 별시장·
<u>장</u>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u>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u>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u>১</u> ].
" <u>시장·군수·구청장</u> "이라 한다)	<u>도지사등</u>
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	
한다.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u>시장·군</u>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u>시·도지</u>
<u>수·구청장</u> 은 제5조에 따른 개	<u>사등</u>
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	
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	
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	
하여야 한다.	
제4조(징수금의 배분) ① 제3조에	제4조(징수금의 배분) ①
따라 징수된 <u>개발부담금의</u> 100	<u>개발부담금 중 10</u>
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	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
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	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는 <u>지방자치단체</u> 에 귀속되고,	<u>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u>

이를	제외한	나머지	] 개발부	나담
금은	「국가군	구형발전	년 특별 <b>법</b>	]
에 따	른 국가	·균형발	전특별호	계
(이하	"특별회	계"라	한다)에	귀
속된디	<b>}</b> .			

- ② ~ ④ (생 략)
-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 ③ (생 략)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생략)
- 제10조(지가의 산정) ① ~ ⑤ (생 략)
  - ⑥ 개시시점지가에 대하여 제3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

	<u>^ '</u>	<u>''-  </u>
-		
-		
-		
-		·
(	) ~ ④ (현행과 급	발 <u></u> 이
제'	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
(	) (현행과 같음)	
(	<u> 시·도지사등</u>	
-		
-		
-		
-		
-		
-		
_		
-		
-		
-		
-		
	) (현행과 같음)	
	)조(지가의 산정)	$(1) \sim (5)$
	현행과 같음)	
(	)	
-		

용받으려는 납부 의무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생략)

- 제12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 지비용 인정) ①·② (생 략)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계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장에게 같은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금액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④ (생 략)
- 제14조(부담금의 결정·부과) ① 기 시장·군수·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 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u>시·도지사등</u>
<u>.</u>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
비용 인정)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시·도지사등
<u> </u>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부담금의 결정·부과) ①
시·도지사등
·
<b></b> _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해당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명세(明細)를 제 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 ② <u>시장·군수·구청장</u>은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 의무자에 게 그 부과 기준과 부과 금액 을 알려야 한다.

#### ③ (생략)

제14조의2(부담금의 조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되돌려주어야 한다.

### ② (생략)

제15조(납부의 고지) ① <u>시장·군</u> 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개

② <u>시·도지사등</u>
<u>.</u>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부담금의 조정 등) ①
<u>시·도지사등</u>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납부의 고지) ① <u>시·도지</u>
사등

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납부 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제16조(추징) ① 시장·군수·구청 장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다른 법률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 함한다)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에 토지를 해당 개발사 업의 목적 용도로 이용하지 아 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가 있으면 감면한 개발 부담금을 징수한다.

#### ② (생략)

## 제18조(납부) ① (생 략)

② 개발부담금은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추징) ① <u>시·도지사등</u>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트리기드 ·
<u>시·도지사등</u>

유사한 토지를 말한다) 또는 건축물로 하는 납부[이하 "물 납"(物納)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 ⑤ (생 략)

제18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1 8조제1항에서 정한 납부 기한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의무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다.

### ② (생략)

제19조(납부 기일 전 징수) ① 시 기 장·군수·구청장은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 기일 전이라도이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1. ~ 7. (생략)

② <u>시장·군수·구청장</u>은 제1항에 따라 납부 기일 전에 개발부담 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
급) ① <u>시·도지사등</u>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납부 기일 전 징수) ①
시·도지사등
1. ~ 7.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지사등</u>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정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그 뜻 과 납부 기일 변경 등을 고지 하여야 한다.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 기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 1. ~ 5. (생략)

- ②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를 인정받으 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시장·군수·구청장</u>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u>시장·군수·구청장</u>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 부) ① <u>시·도지사등</u>
 1. ~ 5.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지사등</u>
 ③ <u>시·도지사등</u>

유예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21조(납부 독촉 및 가산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부담금
의 납부 의무자가 제18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그 개
발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
다.

### ② (생 략)

제22조(체납처분 등) ① <u>시장·군</u> 수·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 부 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 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제23조(결손처분) ① <u>시장·군수·</u> <u>구청장</u>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제21조(납부 독촉 및 가산금) ①
<u>시·도지사등</u>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체납처분 등) ① <u>시·도지</u>
<u>사등</u>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결손처분) ① <u>시·도지사등</u>

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1. ~ 4. (생 략)
- ② <u>시장·군수·구청장</u>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자료 제출 의무) 납부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제25조(자료의 통보) ① 개발부담 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가등을 한 행정청은 인가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그 사실을 <u>시장·군수·구청장</u> 에게 알려야 한다.
  - ② <u>시장·군수·구청장</u>이 개발부 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

,
1. ~ 4.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지사등</u>
<u>.</u>
제24조(자료 제출 의무)
시
<u>도지사등</u>
1. • 2. (현행과 같음)
제25조(자료의 통보) ①
시·도지사등
② <u>시·도지사등</u>

교통	부량	으로	정하는	= 1	바에	따
라	대상	사업,	납부	의트	구자,	부
과	금액,	사업	기간	및	부괴	일
등여	] 관	한 시	항을	부교	<b>-</b> 일부	-터
15ૄ	j o	] 내에	국토	교통	투부정	라관
및	국사	ll청장·	에게	통보	L하여	야
한디	<b>ŀ</b> .					

# 제29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지사등</u>